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2013년 1월 2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신동준 산업피해조사팀장(5561), 한상덕 서기관(4953)
방순자 덤핑조사팀장(5571), 최병달 사무관(4960)
이상준 불공정무역조사팀장(5581), 김성태 주무관(5586)

무역위,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및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개시

무역위원회(위원장 현정택)는 '13.1.23. 무역위원회(제311차)를 개최하고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조사와 음향증폭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

1.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조사 개시

□ 무역위원회는 삼영화학공업(주), (주)필맥스 등이 신청('12.11.22.)한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*("OPP필름")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

* 폴리프로필렌을 용융, 압출 및 냉각과정을 통해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하여 제조한 무색, 무취, 무미하고 투명성과 광택성이 있는 필름(Oriented Polypropylene Film, "OPP필름")

□ OPP필름은 주로 식품, 담배, 의류의 포장재 및 앨범, 접착테이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,

○ 국내시장규모는 '11년 기준으로 3,272억원, 91,957톤 수준이며, 이 중 물량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이 58.7%, 조사대상 수입물품이 24.2%, 기타국 수입이 17.1%를 차지함

- 조사대상 수입물품 시장점유율은 '09년 11.5%이던 것이 '11년에는 24.2%로 최근 크게 증가함

□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(2개월 연장가능)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며, 이어서 3개월(2개월 연장가능)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및 수준을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임

2. 음향증폭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

□ 또한,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('13.1.4)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

□ 동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은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음향증폭기* 제조기술의 유출을 이유로 조사 신청한 사건으로,

* 노래방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향증폭기로 기존에 트랜지스터를 출력소자로 사용한 제품과 달리 전계효과트랜지스터(FET)를 사용하여 음질이 뛰어남

○ 영업비밀인 회로도면 등을 이용,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신청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*와 함께 과징금**을 부과할 수 있음

* 수출입·판매·제조행위 중지, 폐기처분, 정정광고, 사실 공표 등
**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% 이내

○ 또한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,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□ 금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, 추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임

□ 아울러, 피해업체는 영업비밀 침해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 및 품질 등의 거짓표시를 이유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도 무역위원회는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

붙임1.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 반덤핑 조사개시 개요
2. 반덤핑 조사 절차도
3.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붙임1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 반덤핑 조사개시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삼영화학공업(주), (주)필맥스, (주)화승인더스트리

○ 조사대상업체 : 중국의 안후이궈펑, 인도네시아의 아르가, 태국의 에이제이 社 등 8개사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두께가 10마이크론 이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(Oriented Polypropylene Film, "OPP필름")
- 정의 : 폴리프로필렌을 용융, 압출 및 냉각과정을 통해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하여 제조한 무색, 무취, 무미하고 투명성과 광택성이 있는 필름
- 관세분류 : HSK 3920.20.0000, 3921.90.2000
- 용도 : 주로 식품, 담배, 의류의 포장재 및 앨범, 접착테이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삼영화학공업(주), (주)필맥스, (주)화승인더스트리, 제이케이머티리얼즈(주), 율촌화학(주), (주)대림산업 등 6개사

○ 수입자 : (주)우성엠에프, (주)동남소재, 위더스케미칼(주), (주)한국무역인터내셔날 등 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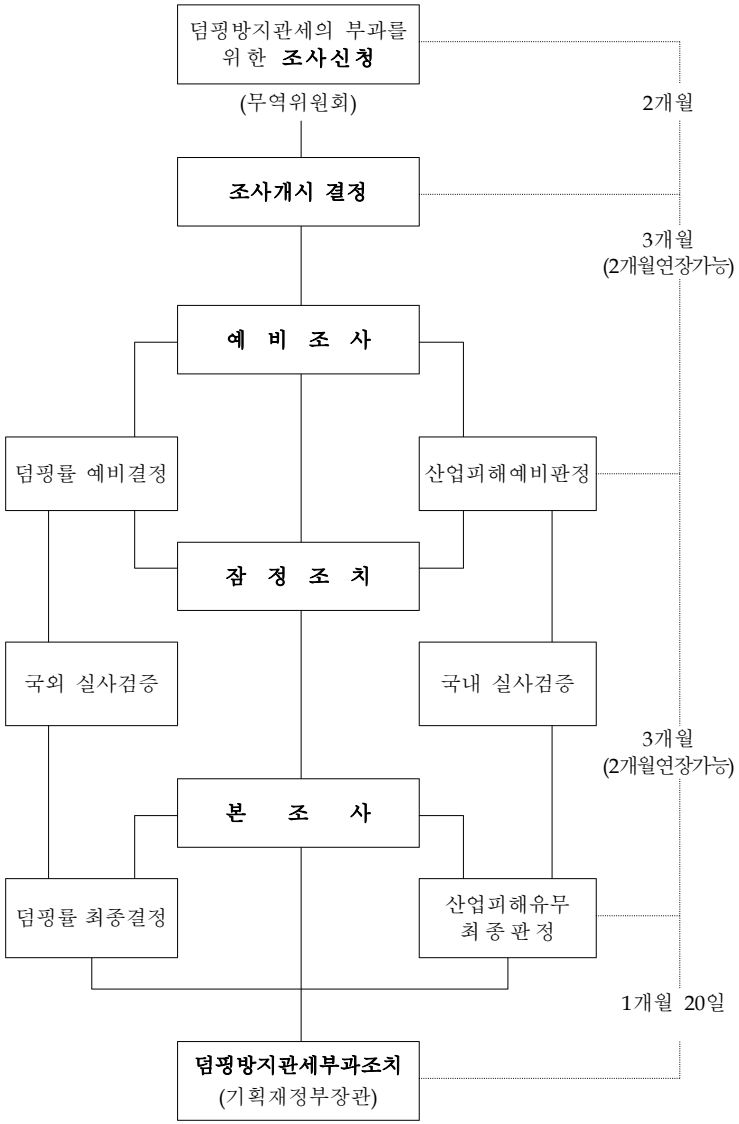
○ 수요자 : 거성특수포장, 보성포장산업, 성우 테이프 등 포장가공업체

○ 국내시장규모('11년) : 3,272억원 / 91,957톤

□ 반덤핑 조사 및 조치 일정

○ 조사개시 결정 → 예비판정(5개월 이내) → 공청회 → 최종판정(5개월 이내) → 반덤핑관세부과 여부 결정 등 조치(기획재정부)

붙임2 반덤핑 조사 절차도



붙임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조사 신청
(신청인→무역조사실)
·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·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

직권조사
·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
(무역조사실/위원회보고)
①신청기간,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②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③결정 즉시 (피)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 통지

잠정조치
①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(담보제공)
②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
③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
(무역조사실)
·조사개시결정시점 직전 3년간 대상(원산지는 5년)
·서면조사 원칙,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
·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·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
·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·판정

의견수렴
·판정전, 제재조치(안)에 대한 (피)신청인의 의견수렴(행정절차법 제21조, 제22조)

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제재조치 결정
(무역위원회)
①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·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·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②판정 즉시 (피)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 통지

제재조치 시행
(무역위원회→피신청인)
·시정조치 명령(명령전에 지경부장관 의견을 들음)
·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
((피)신청인→무역위원회)
·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신청
·무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정조치 집행정지 가능
·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, 행정소송 제기 가능

이의신청 심의·결정
(무역위원회)
·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